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
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11. 2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**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
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**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9호로 2022년 11월 10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항 및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(안 제5조)
 - 피해자 가족면담 및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·브리핑 조항 신설
- 나.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책임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다.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)
- 라.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2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11. 14. ~ 11. 1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 봉사활동 지원 사항 및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가족면담, 주요 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,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 시 재난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및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

조례」 표준안을 개정(관련 문서 시행일 '22. 2. 10.)함에 따라,
이를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임.

- 안 제7조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·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8조에서는 조문 제목 및 현장응급의료소의 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 법령인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3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난수습·복구를 위한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, 이는 지역대책본부장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조정·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(시행 '20. 6. 4.)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(시행 '20. 6. 4.)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수습·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민간 자원봉사 활동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,

- 또한, 행정안전부의 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」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가족 면담,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, 기타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제15조의2(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)**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(이하 “수습본부”라 한다)를 신속하게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수습본부의 장(이하 “수습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.
-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상황관리,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, 장비, 시설 등을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, 소속 직원의 파견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(이하 “지역사고수습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. <신설 2014. 12. 30.>
-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16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대책본부 및 시·군·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)을 지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-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- ⑧ 수습본부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도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·구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

- 제20조(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)** ①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·지휘·조정·통제하고, 사상자를 분류·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(이하 “의료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25.>
-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1.>
- ③ 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15. 4. 3., 2020. 11. 25.>
- ④ 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·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. <개정 2015. 4. 3.>
- ⑤ 의료소의 소장(이하 “의료소장”이라 한다)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. 다만,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3., 2018. 8. 30.>

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
 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
 3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
 4. 삭제 <2020. 11. 25.>
- ⑥~⑪ (생략)